|  |  |  |
| --- | --- | --- |
| **경외 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및 비안 관리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령 제9호  <경외 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및 비안 관리방법>은 이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사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하였기에, 이를 발표하고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4년 10월에 발표한 <경외 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잠정관리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21호 령)은 동시에 폐지한다.  주임：서소사  2014년4월8일  **제1장 총 칙**  **제1조** 경외투자를 촉진하고 규범하여 경외투자관리 직능을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국무원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과 <국무원에 의해 보류된 행정 심사비준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의 결정>에 근거하여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 유형의 법인(이하’투자주체’)이 신설, 인수합병, 지분참여, 증자와 자금 투입 등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외투자프로젝트와 투자주체가 융자 또는 담보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경외기업 또는 기구를 통해 실시하는 경외투자프로젝트에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이 말하는 경외투자프로젝트는 투자주체가 화폐투입, 유가증권, 실물,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 지분, 채권 등 자산과 권익 또는 담보제공을 통해 경외소유권, 경영관리권 및 기타 관련 권익을 획득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제4조** 본 방법이 말하는 중국측 투자액은 투자주체가 경외투자프로젝트에 투입한 화폐, 유가증권, 실물,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 주식, 채권 등 자산과 권익 또는 담보제공의 총액을 지칭한다.  **제5조** 국가는 다른 상황에 근거하여 경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과 비안관리를 구별하여 실행한다.  **제6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국가발전개혁위’)는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기업 경외투자의 거시적인 지도, 투자방향　제시와 종합서비스에 대해 강화하고 다수∙쌍방 투자합작과 대화체제를 통해 투자주체의 경외투자프로젝트를 위한 유리한 외부환경을 적극적으로 창조한다.  **제2장 심사비준과 비안기관 및 권한**  **제7조** 중국측 투자액 10억 달러 그 이상의 경외투자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에서 심사비준한다. 민감한 국가와 지역이 관련되고, 민감한 업종의 경외투자프로젝트의 한도액이 분산되지 않으면 국가발전개혁위에서 심사비준한다. 그 중 중국측 투자액 20억 달러 그 이상이고 민감한 국가와 지역이 관련되며, 민감한 업종의 경외투자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가 감사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이 심사비준한다.  본 방법이 말하는 민감한 국가와 지역은 국교를 수립하지 않고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 전쟁 발생, 내란 등 국가와 지역을 포함한다.  본 방법이 말하는 민감한 업종은 기초 전신운영, 국제 수력자원 개발이용, 대규모 토지개발, 송전간선, 송전망, 뉴스매체 등 업종을 포함한다.  **제8조** 본 방법의 제7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경외투자프로젝트는 비안관리를 실행한다. 그 중 중앙관리기업이 실시하는 경외투자프로젝트, 지방기업이 실시하는 중국측 투자액 3억 달러 그 이상의 경외투자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가 비안한다; 지방기업이 실시하는 중국측 투자액 3억 달러 이하의 경외투자프로젝트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와 신강생산건설병단 등 성급 정부투자주관부문이 비안한다.  **제9조** 경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전기 업무 주기가 길고 필요한 전기비용(계약이행보증금, 보증수속비, 중개서비스비, 자원탐사비 등 포함)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 현행 외환관리규정의 수요에 근거하여 투자주체는 본 방법 제7조, 제8조 규정을 참조하여 프로젝트 전기비용에 대한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신청한다.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거친 프로젝트 전기비용은 프로젝트 중국측 투자액에 기입한다.  **제10조** 중국측 투자액 3억 달러 그 이상의 경외 인수 또는 입찰 프로젝트는 투자주체가 실질성 업무를 대외적으로 전개하기 전 국가발전개혁위에 프로젝트 정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는 프로젝트 정보보고를 받은 후 국가 경외 투자정책과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7 영업일 내 확인서를 발행한다. 프로젝트 정보보고 양식문건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부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경외인수프로젝트는 투자주체가 협의, 청약 등 방식으로 경외 기업 전부 또는 일부분의 지분, 자산 또는 기타 권익의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것을 지칭한다. 경외입찰프로젝트는 투자주체가 경외 공개적인 또는 비공개적인 경쟁성 입찰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외기업 전부 또는 부분의 주식, 자산 또는 기타 권익의 프로젝트를 획득하는 것을 지칭한다.  본 방법이 말하는 실질성 업무를 대외적으로 전개하는 경외인수프로젝트는 대외적으로 구속성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뜻하고, 구속성 가격신고를 제출하고 상대 국가 또는 지역 정부심사부문에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외입찰프로젝트는 대외 정식입찰을 지칭한다.  **제3장 심사비준과 비안 절차 및 조건**  **제11조** 국가발전개혁위에서 심사비준하거나 국가발전개혁위가 감사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에서 심사비준하는 경외프로젝트는 지방기업이 직접 소재지의 성급 정부발전개혁부문에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성급 정부발전개혁부문에 감사의견을 제출한 후 국가발전개혁위에 보고한다; 중앙관리기업은 그룹사나 본사로부터 국가발전개혁위에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보고한다.  **제12조** 국가발전개혁위에 제출하는 프로젝트 신청보고는 주로 프로젝트 명칭, 투자주체 상황, 프로젝트 필요성 분석, 배경 및 투자환경 상황, 프로젝트 실시내용, 투자 융자방안, 리스크분석 등 내용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신청보고 시범개요는 국가발전개혁위가 발표한다.  프로젝트 신청보고는 아래의 첨부문건을 부착해야 한다.  (1) 회사 동사회 결의 또는 관련 출자결의  (2) 투자주체 및 외국측 자산, 경영과 자산신용 상황의 문건  (3) 은행이 발행한 융자의향서  (4) 유가증권, 실물,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 주식, 채권 등 자산권익으로 출자한 경우 자산권익의 평가가치 또는 공정가격에 따라 출자액을 인정하고 상응한 자질을 구비한 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구 등 중개기구가 발행한 심계보고, 자산평가보고 및 권력기구의 확인함 또는 기타 증명이 가능한 유관 자산권익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제3자 서류를 제출한다.  (5) 입찰, 인수합병 또는 합자∙합작 프로젝트는 중국측과 외국측이 체결한 의향서 또는 구조협의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프로젝트 신청보고 및 첨부가 완전하지 않거나 내용이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발전개혁위는 5 영업일 내 신고단위에 1차 고지하여 보충한다.  **제14조** 민감한 국가와 지역과 관련하여, 민감한 업종의 경외투자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가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3 영업일 내 유관부문의 의견을 간청하고 유관부문은 간청 의견함을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내 서면의견을 발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발전개혁위가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수리한 후 확실히 필요하다면 5 영업일 내 자질이 있는 자문기구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위탁을 접수한 자문기구는 규정한 기한 내 평가보고를 제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평가기한은 원칙상 4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평가비용은 국가발전개혁위가 부담하고 자문기구 및 그 업무인원은 신고단위 또는 투자주체에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않는다.  **제16조** 국가발전개혁위는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심사비준 조건에 부합하는 경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해 20 영업일 내 심사비준을 완료하거나 감사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이 심사비준한다. 20 영업일에 심사비준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감사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 담당자가 비준하여 10 영업일을 연장하고 연장기한의 이유를 신고단위에 고지한다.  전항 규정의 심사비준 기한은 위탁자문기구가 평가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17조** 국가발전개혁위는 심사비준한 프로젝트에 대해 신고단위에 서면 심사비준 문건을 발행하고; 심사비준 신청이 수리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면결정의 방식으로 신고단위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투자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 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국가발전개혁위 심사비준 프로젝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법률∙법규와 산업정책, 경외 투자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2) 서로 다같이 이익을 얻고，공동 발전의 원칙에 부합하고 국가주권, 안전과 공공이익을 해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국가 자본프로젝트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투자주체는 상응한 투자실력을 구비해야 한다.  **제19조** 국가발전개혁위가 비안하는 프로젝트에 속하는 지방기업은 경외투자프로젝트 비안신청표를 기입하고 유관 첨부문건을 부착하여 직접 소재지의 성급 정부발전개혁부문에 제출하여 성급 정부발전개혁부문이 국가발전개혁위에 보고한다; 중앙관리기업은 그룹사 또는 본사로부터 국가발전개혁위에 비안신청표와 유관 첨부문건을 보고한다.  경외투자프로젝트 비안신청표 격식문건 및 첨부의 요구는 국가발전개혁위가 발표한다.  **제20조** 비안신청표 및 첨부에 대해 완전하지 않거나 내용이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발전개혁위가 5 영업일 내 신고단위에 1차 고지하여 보충한다.  **제21조** 국가발전개혁위는 비안신청표를 수리한 날로부터 7 영업일 내에 비안조건에 부합하는 경외투자프로젝트에 비안통지서를 발행한다. 비안을 거치지 못한 경외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는 서면결정 방식으로 신고단위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투자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 또는 행정소송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국가발전개혁위는 비안을 신청한 경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주로 비안관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가 자본프로젝트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가주권, 안전, 공공이익 그리고 투자주체가 상응한 투자실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부터 심사비준을 진행한다.  **제23조** 기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거친 경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본 방법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에 변경신청을 한다.  (1) 프로젝트 규모와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  (2) 투자주체 또는 지분구조가 변경된 경우  (3) 중국측 투자액이 기 심사비준 또는 비안의 20% 및 이상을 초과한 경우.  **제4장 심사비준과 비안문건 효력**  **제24조** 투자주체는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통지서로 법에 의거하여 외화, 해관, 출입국관리와 세수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규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거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유관부문은 관련수속을 진행해서는 안 되고 금융기구에 대부금을 지급해서도 안 된다.  **제25조** 투자주체는 국가발전개혁위가 심사비준 및 비안을 거친 경외투자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대외로 최종 법률 구속력을 구비한 문건을 체결하기 전 국가발전개혁위가 발행한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통지서를 취득해야 하며; 체결한 문건에는 효력 발생조건은 법에 의거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행한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통지서 취득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26조** 심사비준 문건과 비안통지서는 유효기간를 규정하고 그 중 건설류 프로젝트 심사비준 문건과 비안통지서 유효기간은 2년이고 기타 프로젝트 심사비준 문건과 비안통지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효기간 내 투자주체가 본 방법 제24조가 서술한 관련 수속처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 영업일 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7조** 국가발전개혁위 업무인원이 아래의 행위 중 하나인 경우, 지정 기일에 수정을 명령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무원처분조례> 등 유관규정에 따라 유관 담당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범죄를 계획한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에 소홀히 하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  (2) 본 방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조건을 위반하여 프로젝트 심사비준, 비안을 진행한 경우  (3)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기타행위.  **제28조** 투자주체는 경외투자프로젝트 신청보고 또는 프로젝트 비안신청표 및 첨부문건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투자주체가 경외투자프로젝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유관 상황 또는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는 수리하지 않거나 심사비준, 비안을 하지 않는다.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통지서를 취득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는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통지서를 취소하고 경고한다.  **제 29조** 본 방법에 의해 규정된 투자주체에 대해서는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하지만 법에 의거하여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통지서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실시한 프로젝트 그리고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통지서 내용을 의거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프로젝트가 발견되면, 국가발전개혁위가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실시를 정지하라고 책령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간청 또는 이관하여 법에 의거하여 유관 담당자의 법률과 행정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본 방법 제10조에 의해 규정된 투자주체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정보보고를 상부에 보고하지만 정보보고 확인함을 획득하지 못하고 실질성 업무를 대외적으로 전개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는 비평, 책령을 통보함으로써 수정한다. 죄질이 엄중하고 국가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발전개혁위는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유관기관에 간청 또는 이관하여 유관 담당자의 법률과 행정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30조** 각 성급 정부투자주관부문은 본 지 기업의 경외투자에 대해 안내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본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상응한 비안관리방법을 제정한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성급 정부투자주관부문의 경외투자프로젝트 비안업무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진행하고 발견한 문제에 대해 지체없이 수정한다.  **제31조** 투자주체가 경외 주식투자에 참여하거나 지분투자 기금을 설립한 경우 본 방법을 활용한다.  개인 또는 기타 조직이 경외에서 실시한 투자프로젝트는 본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32조** 투자주체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실시한 투자프로젝트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투자주체가 대만지역에 실시한 투자프로젝트는 본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33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34조** 본 방법은 201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가 2004년 10월에 반포한 <경외투자프로젝트 잠행관리방법>(제21호 령)은 동시에 폐지한다. |  | **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令 第9号  《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业经国家发展改革委主任办公会讨论通过，现予以发布，并于2014年5月1日起施行。我委2004年10月发布的《境外投资项目核准暂行管理办法》（国家发展改革委第21号令）同时废止。  主任：徐绍史  2014年4月8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促进和规范境外投资，加快境外投资管理职能转变，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国务院关于投资体制改革的决定》和《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特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各类法人（以下简称“投资主体”）以新建、并购、参股、增资和注资等方式进行的境外投资项目，以及投资主体以提供融资或担保等方式通过其境外企业或机构实施的境外投资项目。  **第三条** 本办法所称境外投资项目是指投资主体通过投入货币、有价证券、实物、知识产权或技术、股权、债权等资产和权益或提供担保，获得境外所有权、经营管理权及其他相关权益的活动。  **第四条** 本办法所称中方投资额是指投资主体为境外投资项目投入的货币、有价证券、实物、知识产权或技术、股权、债权等资产和权益或提供担保的总额。  **第五条** 国家根据不同情况对境外投资项目分别实行核准和备案管理。  **第六条**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以下简称“国家发展改革委”）会同有关部门加强对企业境外投资的宏观指导、投向引导和综合服务，并通过多双边投资合作和对话机制，为投资主体实施境外投资项目积极创造有利的外部环境。  **第二章 核准和备案机关及权限**  **第七条** 中方投资额10亿美元及以上的境外投资项目，由国家发展改革委核准。涉及敏感国家和地区、敏感行业的境外投资项目不分限额，由国家发展改革委核准。其中，中方投资额 20 亿美元及以上，并涉及敏感国家和地区、敏感行业的境外投资项目，由国家发展改革委提出审核意见报国务院核准。  本办法所称敏感国家和地区包括：未建交和受国际制裁的国家，发生战争、内乱等国家和地区。  本办法所称敏感行业包括：基础电信运营，跨境水资源开发利用，大规模土地开发，输电干线、电网，新闻传媒等行业。  **第八条** 本办法第七条规定之外的境外投资项目实行备案管理。其中，中央管理企业实施的境外投资项目、地方企业实施的中方投资额3亿美元及以上境外投资项目，由国家发展改革委备案；地方企业实施的中方投资额3亿美元以下境外投资项目，由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和新疆生产建设兵团等省级政府投资主管部门备案。  **第九条** 对于境外投资项目前期工作周期长、所需前期费用（包括履约保证金、保函手续费、中介服务费、资源勘探费等）规模较大的，根据现行外汇管理规定的需要，投资主体可参照本办法第七、八条规定对项目前期费用申请核准或备案。经核准或备案的项目前期费用计入项目中方投资额。  **第十条** 中方投资额3亿美元及以上的境外收购或竞标项目，投资主体在对外开展实质性工作之前，应向国家发展改革委报送项目信息报告。国家发展改革委收到项目信息报告后，对符合国家境外投资政策的项目，在7个工作日内出具确认函。项目信息报告格式文本由国家发展改革委发布。  本办法所称境外收购项目，是指投资主体以协议、要约等方式收购境外企业全部或者部分股权、资产或其它权益的项目。境外竞标项目，是指投资主体参与境外公开或不公开的竞争性投标等方式获得境外企业全部或者部分股权、资产或其它权益的项目。  本办法所称对外开展实质性工作，境外收购项目是指对外签署约束性协议、提出约束性报价及向对方国家或地区政府审查部门提出申请，境外竞标项目是指对外正式投标。  **第三章 核准和备案程序及条件**  **第十一条** 由国家发展改革委核准或由国家发展改革委提出审核意见报国务院核准的境外投资项目，地方企业直接向所在地的省级政府发展改革部门提交项目申请报告，由省级政府发展改革部门提出审核意见后报送国家发展改革委；中央管理企业由集团公司或总公司向国家发展改革委报送项目申请报告。  **第十二条** 向国家发展改革委报送的项目申请报告主要包括项目名称、投资主体情况、项目必要性分析、背景及投资环境情况、项目实施内容、投融资方案、风险分析等内容。项目申请报告示范大纲由国家发展改革委发布。  项目申请报告应附以下附件：  （一）公司董事会决议或相关的出资决议；  （二）投资主体及外方资产、经营和资信情况的文件；  （三）银行出具的融资意向书；  （四）以有价证券、实物、知识产权或技术、股权、债权等资产权益出资的，按资产权益的评估价值或公允价值核定出资额，并应提交具备相应资质的会计师事务所、资产评估机构等中介机构出具的审计报告、资产评估报告及有权机构的确认函，或其他可证明有关资产权益价值的第三方文件；  （五）投标、并购或合资合作项目，应提交中外方签署的意向书或框架协议等文件。  **第十三条** 对于项目申请报告及附件不齐全或内容不符合规定要求的，国家发展改革委在5个工作日内一次性告知申报单位予以补正。  **第十四条** 涉及敏感国家和地区、敏感行业的境外投资项目，国家发展改革委在受理项目申请报告之日起3个工作日内征求有关部门意见，有关部门应当自收到征求意见函之日起7个工作日内出具书面意见。  **第十五条** 国家发展改革委在受理项目申请报告后，若确有必要，应在5个工作日内委托有资质的咨询机构进行评估。接受委托的咨询机构在规定时限内提出评估报告，并对评估结论承担责任。  评估时限原则上不超过40个工作日。  评估费用由国家发展改革委承担，咨询机构及其工作人员不得收取申报单位或投资主体的任何费用。  **第十六条** 国家发展改革委自受理项目申请报告之日起，对于符合核准条件的境外投资项目在20个工作日内完成核准，或提出审核意见报国务院核准。如20个工作日不能做出核准决定或提出审核意见的，由国家发展改革委负责人批准延长10个工作日，并将延长期限的理由告知申报单位。  前款规定的核准期限，不包括委托咨询机构评估的时间。  **第十七条** 国家发展改革委对核准的项目将向申报单位出具书面核准文件；对不予核准的项目，将以书面决定的方式通知申报单位并说明理由，投资主体享有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第十八条** 国家发展改革委核准项目的条件为：  （一）符合国家法律法规和产业政策、境外投资政策；  （二）符合互利共赢、共同发展的原则，不危害国家主权、安全和公共利益，不违反我国缔结或参加的国际条约；  （三）符合国家资本项目管理相关规定；  （四）投资主体具备相应的投资实力。  **第十九条** 属于国家发展改革委备案的项目，地方企业应填报境外投资项目备案申请表并附有关附件，直接提交所在地的省级政府发展改革部门，由省级政府发展改革部门报送国家发展改革委；中央管理企业由集团公司或总公司向国家发展改革委报送备案申请表及有关附件。  境外投资项目备案申请表格式文本及附件要求由国家发展改革委发布。  **第二十条** 对于备案申请表及附件不齐全或内容不符合规定要求的，国家发展改革委在5个工作日内一次性告知申报单位予以补正。  **第二十一条** 国家发展改革委在受理备案申请表之日起 7 个工作日内，对符合备案条件的境外投资项目出具备案通知书。对不予备案的境外投资项目，国家发展改革委将以书面决定的方式通知申报单位并说明理由，  投资主体享有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第二十二条** 国家发展改革委对申请备案的境外投资项目，主要从是否属于备案管理范围，是否符合相关法律法规、产业政策和境外投资政策，是否符合国家资本项目管理相关规定，是否危害国家主权、安全、公共利益，以及投资主体是否具备相应投资实力等进行审核。  **第二十三条** 对于已经核准或备案的境外投资项目，如出现下列情况之一的，应按照本办法第七、八条规定向国家发展改革委申请变更：  （一）项目规模和主要内容发生变化；  （二）投资主体或股权结构发生变化；  （三）中方投资额超过原核准或备案的20％及以上。  **第四章 核准和备案文件效力**  **第二十四条** 投资主体凭核准文件或备案通知书，依法办理外汇、海关、出入境管理和税收等相关手续。对于未按规定权限和程序核准或者备案的项目，有关部门不得办理相关手续，金融机构不得发放贷款。  **第二十五条** 投资主体实施需国家发展改革委核准或备案的境外投资项目，在对外签署具有最终法律约束效力的文件前，应当取得国家发展改革委出具的核准文件或备案通知书；或可在签署的文件中明确生效条件为依法取得国家发展改革委出具的核准文件或备案通知书。  **第二十六条** 核准文件和备案通知书应规定有效期，其中建设类项目核准文件和备案通知书有效期二年，其他项目核准文件和备案通知书有效期一年。  在有效期内投资主体未能完成办理本办法第二十四条所述相关手续的，应在有效期届满前30个工作日内申请延长有效期。  **第五章 法律责任**  **第二十七条** 国家发展改革委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其限期整改，并依据《行政机关公务员处分条例》等有关规定追究有关责任人的行政责任；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一） 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索贿受贿的；  （二） 违反本办法规定的程序和条件办理项目核准、备案的；  （三） 其他违反本办法规定的行为。  **第二十八条** 投资主体应当对境外投资项目申请报告或项目备案申请表及附件的真实性、合法性负责。投资主体在境外投资项目申报过程中违反法律法规，隐瞒有关情况或提供虚假材料的，国家发展改革委将不予受理或不予核准、备案；已经取得核准文件或备案通知书的，国家发展改革委将撤销核准文件或备案通知书，并给予警告。  **第二十九条** 对于按照本办法规定投资主体应申请办理核准或备案但未依法取得核准文件或备案通知书而擅自实施的项目，以及未按照核准文件或备案通知书内容实施的项目，一经发现，国家发展改革委将会同有关部门责令其停止项目实施，并提请或者移交有关机关依法追究有关责任人的法律和行政责任。  对于按照本办法第十条规定投资主体应报送项目信息报告但未获得信息报告确认函而对外开展实质性工作的，国家发展改革委将予以通报批评，责令其纠正。对于性质严重、给国家利益造成严重损害的，国家发展改革委将会同有关部门依法进行处罚，并提请或者移交有关机关依法追究有关责任人的法律和行政责任。  **第六章 附 则**  **第三十条** 各省级政府投资主管部门要加强对本地企业境外投资的引导和服务，并参照本办法规定制定相应的备案管理办法。  国家发展改革委对省级政府投资主管部门境外投资项目备案工作进行指导和监督，并对发现的问题及时予以纠正。  **第三十一条** 投资主体在境外投资参股或设立股权投资基金，适用本办法。  自然人和其他组织在境外实施的投资项目，参照本办法规定另行制定具体管理办法。  **第三十二条** 投资主体在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实施的投资项目，参照本办法执行。  投资主体在台湾地区实施的投资项目，参照本办法规定另行制定具体管理办法。  **第三十三条** 本办法由国家发展改革委负责解释。  **第三十四条** 本办法自2014年5月8日起施行。国家发展改革委于2004年10月颁布的《境外投资项目暂行管理办法》（第21号令）同时废止。 |